고용노동부

보 도 자 료

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✍보도일시: 2021. 8. 23.(월)
✍총 6쪽

❖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
과 장 박진수 (032-460-4620)
근로감독관 홍광춘 (032-460-4655)

추석을 앞두고 체불예방 · 청산에 집중한다

▲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(8.23.~9.19.)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
▲ 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

□ 중부고용노동청(청장 이헌수)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**「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」**을 수립 · 시행한다.

1 중부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**8. 23.(월)부터 9. 19.(일)까지 4주간**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**집중 지도기간을 운영**한다.

○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**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파악하여**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**사전지도**하고,

- **중부고용노동청 관내 15개 지방노동관서**에 **「체불청산 기동반」을 편성**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**집단 체불이 발생**하는 경우 **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**할 예정이다.

○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**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** 실시하며,

- 코로나 19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.

2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.

○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**신속히 지급**받을 수 있도록 **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**하고 **(8.23.~9.17.)**,

○ **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**도 **한시적으로 0.5%p 인하***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.

* ▲(이자율 인하) 연 1.5% → **1.0% <기간: '21.8.23.~10.22.,>**
▲(한도) 1인당 1천만원 (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)

○ 또한, 체불임금 **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**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**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.0%p인하***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.

* ▲(이자율 인하) 담보 2.2% → **1.2%**, 신용·연대보증 3.7% → **2.7% <기간: '21.8.23.~10.22.>**
▲(한도) 사업주당 1억원, 근로자 1인당 1,000만원 <한도 증액: 사업주당 7천만원 → 1억원, 근로자 1인당 600만원 → 1천만원>

□ 이헌수 청장은 "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**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**"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홍광춘(☎032-460-4655) 또는 경기고용노동지청, 강원고용노동지청 등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**임금체불 현황 ('21.7월말 기준)**

❖ '21.7월말 기준 체불발생액은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전년比 15.6% 감소했으며 남아있는 체불액도 대폭 감소(-28.3%)

체불발생액		체불청산액		남아있는 체불액
8,273억원(–15.6%)	–	6,990억원(-12.7%)	=	1,283억원(-28.3%)

□ 임금체불 현황 ('21.1~7월)

【전년 동기대비 체불현황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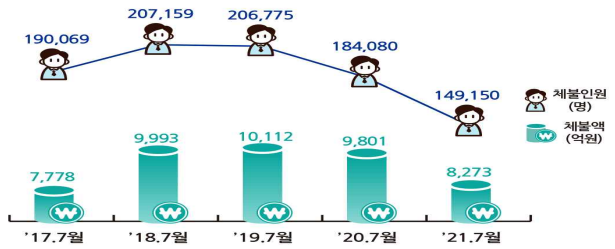

【남아있는 체불액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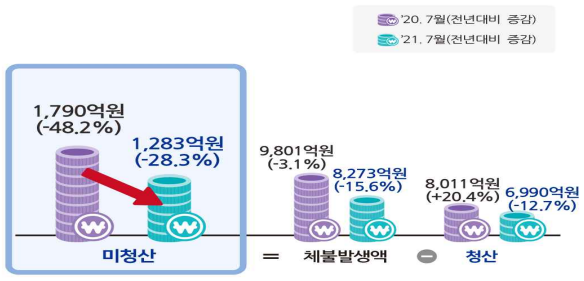

❶ (발생) 체불액은 8,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.6% 감소
체불인원은 149,1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.0% 감소

❷ (청산) 청산액은 6,9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.7% 감소
청산인원은 147,9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.2% 감소

* 청산 = (지도해결+체당금+무료법률구조지원) - (지도해결과 체당금 중복)

❸ (미청산) 남아있는 체불액은 1,2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.3% 감소
남아있는 체불인원은 1,2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.5% 감소

□ 업종별 · 규모별 발생액 현황

○ 업종별로는 **제조업(33.2%), 건설업(18.6%)** 순으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, **30인 미만**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**73.7%** 차지

【 '21년 7월 업종별 임금체불액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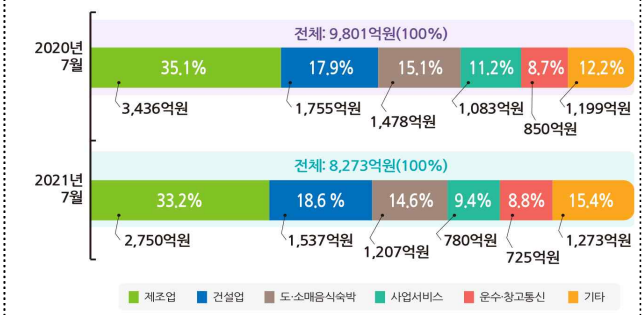

【 '21년 7월 규모별 임금체불액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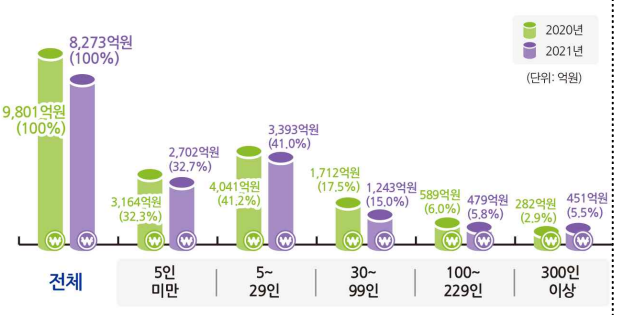

참고 2 **체당금 제도** * '21.10.14.부터 **'대지급금'**으로 용어 변경

□ 제도 개요

○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**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**

□ 지원 요건 및 범위

구분	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
일반 체당금 (도산 대지급금)	○ **(지급사유)**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,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○ **(지급범위)** 최종 3개월분의 임금·휴업수당·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○ **(상한액)**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, 최대 2,100만원('20.1.1.~) 지급
소액 체당금 (간이 대지급금)	○ **(지급사유)**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○ **(지급범위)** 최종 3개월분의 임금·휴업수당·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○ **(상한액)** 총 상한액은 1,000만원이며, 「임금(휴업수당·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」, 「퇴직급여등」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('19.7.1.~)

□ 지원 절차

구분	절차			
일반 체당금 (도산 대지급금)	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근로자 → 지방노동관서	▸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근로자 → 지방노동관서	▸ 지급청구서 송부 지방노동관서 → 근로복지공단	▸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
소액 체당금 (간이 대지급금)	임금청구소송 제기 근로자 → 법원	▸ 소액 체당금 신청 근로자 → 근로복지공단	▸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근로복지공단	▸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

□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주요 내용('21.10.14. 시행)

구분	개정 내용
용어변경	○ 체당금 → "체불임금 등 대지급금"(약칭 **"대지급금"**)으로 변경 * 일반체당금은 "**도산 대지급금**", 소액체당금은 "**간이 대지급금**"으로 변경
재직자 대지급금 신설	○ 기존의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 대지급금 지급 * 기금 여건, 도덕적 해이를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
지급절차 간소화	○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「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」만으로 간이 대지급금 지급(소요기간 약 7개월 → 2개월로 단축)

참고 3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

□ 제도 개요

○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, **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**

□ 지원 요건

구분	지원 요건
사업주 요건	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(임채법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)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 * 다만, 휴·폐업 사업장,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
근로자 요건	ㅇ **(재직자)**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**(퇴직자)**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

□ 융자금액 및 조건

구분	융자 조건
융자금액	ㅇ 사업주당 1억원 한도(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) *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
이자율	ㅇ 담보 연 2.2%, 신용 연 3.7% * **이자율 1.0%p 한시 인하(8.23.~10.22)**: 신용.연대보증 3.7% → **2.7%**, 담보제공 2.2% → **1.2%**
상환방법	ㅇ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* 다만 천재지변,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

□ 융자신청 절차

-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(지방관서) → 융자 결정(근로복지공단) → 융자 실행(기업은행)

참고 4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

□ 제도 개요

○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**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**하여 생활안정 지원

□ 지원 요건

구분	지원 요건
근로자 요건	ㅇ **(재직자)** 체불 사업장(폐업된 경우는 제외)에서 재직 중 ㅇ **(퇴직자)**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*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
체불 요건	ㅇ 신청일 이전 **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** *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(개별직종노임단가)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('21년 694,945원) 금액 이상이 체불

□ 융자금액 및 조건

구분	융자 조건
융자금액	ㅇ **(재직자)**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(총 1천만원 한도) *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 **(퇴직자)** 최종 3개월간의 임금(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(총 1천만원 한도)
이자율	ㅇ 연 1.5% 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상환방법	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*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,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

□ 융자신청 절차

○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(근로자→근로복지공단) → 융자 결정,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(근로복지공단) → 융자 실행(기업은행)